

1992年度 道有財產 管理計劃承認(案)

檢 討 報 告 書

1. 提 出 者 : 忠清北道知事

2. 提出日字 및 回附日字

가. 提出日字 : 1991년 11월 25일

나. 回附日字 : 1991년 11월 26일

3. 提出理由

- 道有財產의 保存 및 管理業務의 體系化와 能率化를 期하고, 地方財政의 健全한 發展을 期하기 위하여 '92道有財產管理計劃을 樹立하여 道有財產 管理運營에 徹底를 期하고자 함.

4. 主要骨子

一 道有財產의 取得 및 賣却에 對한 計劃

가. 取得 및 處分財產의 表示

(1) 一般會計

(가) 取得財產

- 公營開發事業團 廳舍新築用地買入(公營開發事業團 所管)
 - 清州市 佳景2地區 宅地開發地區內 主商混用地(58브릭)
1,984㎡, 900,000천원
- 保健環境研究院 事務所, 試驗室 增築(保健環境研究院 所管)
 - 清州市 松亭洞 140-50番地 910.8㎡ 600,000千원
- 代替財產 造成土地 買入
 - 對象地 調査後 確定 1,355㎡ 271,000千원

(4) 賣却財産

- (주)신일건설 商街아파트 新築敷地內 道有雜種財産
- 淸州市 남주동 450번지의 2필지 39.9㎡ 21,546천원

(2) 公有林管理 特別會計

(7) 取得財産

- 道有林野 擴大計劃에 依한 林野買入(道有林事業所 所管)
- 林野 買入 1필지 200,000㎡ 150,000천원

(8) 賣却財産

- 道有林 管理 特別會計 財産増殖을 爲한 入木賣却(道有林事業所所管)
- 立木賣却 4필지 6,022㎡ 150,550천원

나. 取得 및 處分の 事由

(1) 一般會計

(7) 取得財産

- 忠淸北道 公營開發事業團 廳舍新築用地 買入
- 淸州 佳景2地區 宅地開發地區內 旅客터미널과 事業地區 隣近에 公共敷地 確保로 公營開發事業團 廳舍를 新築코자 함.
- 忠淸北道 保健環境研究院 事務室 및 試驗室 増築
- 廳舍內 事務室 및 試驗室을 増築하여 勤勞環境을 改善코자 함.
- 代替財産 敷地買入
- 賣却財産에 相應한 財産確保로 效率的인 道有財産 管理運營

(8) 賣却財産

- 道有雜種財産 賣却(淸州市 南州洞 450番地外 2필지)
- 淸州市 남주동 구 청과물시장 도심의 落後地域을 開發하는 차원에서 상가아파트 신축단지로 책정 추진중인 바, 단지내에 도 유재산이 편입되는 關係로 事業이 지연된다는 淸州市長의 意見과 주민의 輿論이 있어 주민의 여론을 解決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키 爲하여 賣却코자 함.

(2) 公有林管理 特別會計

㉞ 取得財産

○ 林野買入

— 道有林野 擴大計劃에 依한 財産増殖

㉟ 賣却財産

○ 立木賣却

— 營林計劃에 의지 立木賣却으로 公有林管理 特別會計 財産増殖

5. 檢討意見

1992年度 道有財産管理計劃承認(案)을 檢討한 바

가. 一般會計에 있어

(1) 取得財産은 公營開發事業團 廳舍新築用地 買入과 保健環境研究院 事務室 및 試驗室 増築 및 代替財産 造成 敷地를 買入하는 것으로서

○ 公營開發事業團 廳舍新築用地는 淸州市 佳景2地區 宅地開發地區內 住商混用地(58브릭) 1,984㎡(1㎡ 453천원)를 買入하여 廳舍新築用地로 活用함이 妥當하다고 思料되며

○ 保健環境研究院 事務室 및 試驗室 増築에 있어서는 淸州市 송정동 140-50번지 910.8㎡(1㎡ 658천원)로서 淸사내 사무실 및 시험실을 増築하므로써 勤勞環境을 改善코자 하는 것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代替財産 造成敷地買入 1,355㎡에 對하여는 忠淸北道公有財産管理條例 第8條에 의하여 公有財産의 치분제원은 반드시 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財産造成費에 충당하여야 함으로 對象地를 탐색하여 買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賣却財産에 있어서는 淸州市 남주동 450번지의 2필지로 39.9㎡(1㎡ 540천원)의 매각재산으로서

이곳은 농수산물 都賣市場이 청주시 봉명동으로 1988年度에 이전함에 따라 주식회사 상가아파트 신축부지내에 소재하고 있어 산재되어 있는 道有雜種財産을 賣却하여 代替財産土地買入費에 尙當토록하는 것 인바 承認하여 증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公有林管理 特別會計에 있어

(1) 賣却財産에 있어 입목매각은 營林計劃에 義學하여 槐山郡 장연면 방속리 산49-4의 4개 地域의 입목 6,022㎡(1㎡ 25천원)를 벌채하여 매각하는 것을 그 매각수입으로 公有林을 買入 財産增殖을 期함에 있는 것으로 承認하여 증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取得財産은 道有林野擴大를 위하여

立木賣却收入金으로 對象地를 選定調査後 20만㎡(1억5천원)에 달하는 林野를 買入 道有林野의 擴大로 財産增殖을 하도록 함이 妥當하다고 사료됨.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연권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만순위원 박만순위원입니다.

공영개발단에서 누구 나오셨나요?

공영개발단에서 나오신분 없어요?

지금 공영개발단 청사를 짓겠다고

해서 가경2지구 58% 약 630평 정도

되는것 같네요. 취득하겠다고 하는

안인데 왜 도대체 주상혼용지라고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 일반 주민들이 알고 있는 이런 상업 지역역에 주상혼용지역 아주 1급지로 생각을 하는 노른자위 땅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주상혼용지하고 상업지역은 공매를 하는 것으로 경쟁 입찰에 의한 방식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